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7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권성동 · 윤한홍
서일준 · 김대식 · 박상웅
김도읍 · 박정하 · 이종배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담배를 ‘연초의 잎’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, 전자거래가 가능함.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).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연초(煙草)의 잎”을 “연초(煙草) 및 니코틴(원소·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연초의 잎과”를 “연초 및 니코틴 등 담배의 원료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.

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담배”란 <u>연초(煙草)의 잎을</u>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.	1. ----- <u>연초(煙草) 및 니코틴(원소 ·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몰수와 추정) ① 제27조 ·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<u>연초의 잎과</u> 담배는 몰수한다.	제30조(몰수와 추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연초 및 니코틴 등 담배의 원료와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